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재난관리물품의 정리기준(제14조제4항 관련)

구분	구분 명세
1. 구입	구매를 통해 수입(收入)하는 경우
2. 수령	지원기관 또는 지원부서에서 수입하는 경우(청구수령과 할당수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생산	자체적인 제조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4. 편입	재난관리재산에서 재난관리물품으로 편입하는 경우
5. 재난관리재산 편입	재난관리물품을 재난관리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6. 부생(復生)	없어졌던 재난관리물품이 다시 생겨난 경우
7. 관리전환	관리전환을 통해 수입 또는 출급하는 경우(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8. 반납	반납받거나 반납하는 경우
9. 분류전환	분류전환으로 정리하는 경우
10. 기증	기증받거나 기증하는 경우
11. 출급	보급지원 또는 사용을 위하여 출급하는 경우(청구출급과 할당출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12. 양여	양여하는 경우(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3. 대여	대여하는 경우(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4. 매각	매각하는 경우
15. 해체	해체하는 경우
16. 폐기	폐기하는 경우
17. 망실	망실된 재난관리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18. 자연 감모(減 耗)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6조 또는 「물품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자연 감모된 재난관리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19. 관급(官給)	관급하는 경우
20. 사용전환	사용 중인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운용관에게 이전하는 경우
21. 가격평가	제14조제2항 각 호의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평가를 하는 경우
22. 기타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재난관리물품의 정리